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한기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4525호)

2023. 11.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타법 유사 사례	6

I. 제안경위

1. 발의자 : 한기호의원 등 11인
2. 발의일 : 2023. 9. 18.
3. 회부일 : 2023.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자체가 설치한 초소 등의 대체시설은 국가에 양여가 불가하고, 이로 인해 지자체가 대체시설 유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관할부대·지자체간 대체시설 제공을 조건으로 한 민통선·군사보호구역 조정 협의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 군사분계선에서부터 거리개념으로 지정되어 있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횡으로 넓게 퍼져있는 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가 설치한 대체시설 소유권을 軍이 인계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民·軍간 통합적 협력관계 구축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자체의 대체 시설 등의 제공을 조건으로 한 원활한 군사보호구역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1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초소 등 대체 시설 설치 등을 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¹⁾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나 출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행정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양쪽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일반재산이 10년 이내에 그 양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양여의 대상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생략) <u><신 설></u>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u>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u>

□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규정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완화를²⁾ 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음.

-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防空)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호~5호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다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완화로 인하여 군의 작전 사항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는 군에 대체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³⁾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군에 제공하는 대체 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이를 국가에 양여(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 관계로,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대체 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를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완화 협의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음.

□ 이에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대체 시설 등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여 국가가 정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 시설 등의 소유권 및 관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도한 물자 및 장비
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법제처 해석(2020. 7. 30.)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그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바, 동 법 제19조 및 제4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체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 불가

또한 소유권 및 관리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등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해당 시설 등의 소유권 및 유지관리 부담 주체가 명확해지므로 관할 부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보호구역 완화와 관련된 협의 진행 시 갈등 요인이 해소될 수 있어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309

※ 참고자료

1. 타법 유사 사례

「국방과학연구소법」

제21조(군수품·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 ③ 연구소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의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공유재산의 양여에 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에 양여(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공유재산이 진흥지구에 위치할 것
2. 해당 공유재산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시설·설비 등일 것
3. 제15조제3항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어 매입, 신축, 재건축 또는 개축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양여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폐교 등으로 인하여 그 공유재산을 양여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양여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